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13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2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3월 28일, 남창진 의원 (찬성자 33명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다. 상정일자 :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
(2025년 4월 22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남창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7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「특정관리대상시설」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「3종시설물」로 편입되었고,
- 202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의 「1종시설물」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「2·3종시설물」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.

- ‘3중시설물’과 ‘법정외 시설물’을 ‘1종·2종이외시설물’로 묶은 부분에서 ‘3중시설물’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중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함(안 제3조제17호).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) 제7조제3호¹⁾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3종시설물’을 현행 조례에 추가하여,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도 1·2종 시설물과 동일하게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<u>17.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.</u> 18.·19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</u> 18.·1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<u>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</u> 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<u>1종·2종이외시설물</u> 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<u>1종·2종·3종시설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</u>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1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(시설물의 종류) 3. 제3종시설물: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- 특별법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²⁾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의무를 부과³⁾하고 있음.
- 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나 구조적 중요성, 안전관리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·2종 시설물⁴⁾과 1·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·고시된 3종시설물로 구분하고 있는데(〔붙임〕 참고),
- 3종 시설물은 당초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·관리해오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이었으나,
-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⁵⁾하기 위해 2018년 제3종 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.
- 반면, 현행 조례는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

2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3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이하 “시설물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수립하여야 한다.

4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(시설물의 종류)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(이하 “제1종시설물”이라 한다)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(이하 “제2종시설물”이라 한다)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.

5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함께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에 대해서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. <시행 2018.1.18.>

규정⁶⁾하고 있으나 그 대상 시설물을 ‘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등’으로 정하고 있으며,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⁷⁾토록 규정하고 있음.

- 이에 안 제3조제17호는 ‘제3종시설물’의 정의를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‘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지정·고시⁸⁾된 시설물’로 명시하는 한편,
- 안 제6조제1항을 통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법정 시설물인 ‘3종시설물’에 대해서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- 이는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‘3종시설물’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3종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뿐만 아니라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통일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또한, 서울시는 2018년 3종시설물이 특별법에 편입된 이후 3

6)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7)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②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8)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(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·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·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중시설물을 지정하여 법정시설물로 관리해오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 기존 시설물 관리체계와도 부합한다 하겠음.

[표] 서울시 시설물 현황

(2025.4.1.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(FMS) 기준)

구분	계	교량				교량기타	터널		옹벽			절토사면	상하수도		하천				기타
		도로교량	육교	복개구조	철도교량		도로터널	지하차도	건축옹벽	도로옹벽	기타옹벽	도로사면	공공하수처리시설	지방상수도	배수펌프장	수문및통문	제방	하구둑	
합계	1,806	548	149	47	1	9	53	193	4	66	9	7	5	190	149	233	19	2	122
1종	584	111	-	21	-	-	17	7	-	-	-	-	-	190	82	154	-	2	-
2종	489	123	-	26	-	9	29	63	3	58	1	7	5	-	67	79	19	-	-
3종	733	314	149	-	1	-	7	123	1	8	8	-	-	-	-	-	-	-	122

- 참고로, 특별법 개정(24.12.3.개정)으로 25년 12월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기존 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제2·3종 시설물까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
- 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는 현재 지정·관리 중인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2종·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현황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고,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[붙임] 시설물의 종류

[붙임] 시설물의 종류

□ 시설물의 종류⁹⁾

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1항 관련)

구 분	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	1종	2종	3종
도로 시설	교량	< 도로교량 > -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·사장교·아치교·트러스교인 교량 -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(한 경간 교량은 제외)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-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	-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	-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 도로교량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
		< 철도교량 > - 고속철도 교량 -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-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, 아치교인 교량 -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	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	-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
	터널	< 도로터널 > 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-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	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써 고속일반국도 및특별·광역시도의 터널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	-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
		< 철도터널 > - 고속철도 터널 - 도시철도 터널 -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	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	-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
	방음시설	-	-	「도로법시행령」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구조로 된 시설
	육교	-	-	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
	지하차도	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	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	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

9)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중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해당하는 시설물만을 발췌.

구 분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1종	2종	3종
지하도상가	○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한다)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㎡ 이상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 포함)	○ 5,000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)
옹벽/절토사면	-	○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○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	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옹벽으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100미터 이상인 옹벽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옹벽으로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
하천	하구둑	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	○ 하구둑 ○ 포용조수량 8천만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천만제곱미터 이상의 방조제	
	수문 및 통문		
	○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(通門)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○ 특별시,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	
	제방		
		○ 국가하천의 방[부속시설인 통관(通管) 및 안(護岸)을 포함한다]	
	보		
	○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	○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	
상하수도	○ 광역상수도 ○ 공업용수도 ○ 1일 공급능력 3만㎡ 이상의 지방상수도	○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○ 공공하수처리시설(1일 최대 처리용량 500㎡ 이상인 시설만 해당됨)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
구 분	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시설물안전법)		
	1종	2종	3종
공동구		○공동구	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기 타	-	-	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·터널·옹벽·항만·댐·하천·상하수도 등의 구조물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영옥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춘선, 봉양순,
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장태용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2017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3종시설물’로 편입되었고,
- 202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의 ‘1종시설물’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‘2·3종시설물’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.
- ‘3종시설물’과 ‘법정외 시설물’을 ‘1종·2종이외시설물’로 묶은 부분에서 ‘3종시설물’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함(안 제3조제17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”을 “1종·2종·3종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을 “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17.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 ---- 1종·2종·3종시설물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7호 중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